

의과대학 연구자원위원회 운영규칙

제정 2014. 12. 3

제 1 조(목적)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(이하 “의과대학”이라 한다) 내 연구관련 공간, 의료장비 및 기계기구, 연구지원인력 등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장 자문기구로서 의과대학 연구자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의과대학 내 연구공간의 효율적 운영
2. 공동기기 관리운영
3. 연구지원인력 운영
4. 기타 의과대학 연구발전을 위한 사항 등

제 3 조(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4 조(위촉 및 임기) ① 위원장은 연구부학장으로 한다.

- ② 위원은 위원장과 의과대학장이 협의하여 의과대학장의 제청으로 의료원장이 위촉한다.
-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.

제 5 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단, 위원장 부재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한다.
- ③ 회의는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된다.

제 6 조(회의록 및 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며 중요한 사항은 의과대학장에게 보고한다.

제 7 조(보칙)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과대학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이전 구성된 의과대학 연구자원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